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여군

내 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¹⁾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²⁾에서 검사³⁾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설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1)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15. 1. 1.) 전 중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중
가. 유해화학물질 연간사용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나. 유해화학물질 연간사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공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기준

- 가. 설치검사 : 2015. 1. 1. 이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가동 전 설치검사를 실시
나. 정기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실시(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의 경우는 2년)

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 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1. 당진시 ○○과(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관리 부적정)

당진시는 아래 [표1]과 같이 하수처리용량 500m³/일 이상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를 설치·운영하면서 PH조정용과 세정용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표1] 당진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가동일	취급 유해화학물질	사용용도	설비현황	감사 시 지적사항
○○○○	22,800	2002.4.	수산화나트륨 (NaOH)	수질균등조/ 약품혼화조 pH 조정용	약품저장탱크 : 3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미 실시 (6개 시설)
○○	3,500	2005.6.	수산화나트륨, 황산	사여과지 세정용	약품창고	
○○	3,500	2009.12.	수산화나트륨, 황산	분리막 세정용	약품창고 : 56㎡	
○○1	1,500	2009.9.	수산화나트륨, 황산	분리막 세정용	약품창고 : 13.3㎡	
○○2	3,000	2017.3.	수산화나트륨, 황산	분리막 세정용		
○○	700	2009.9	수산화나트륨, 황산	분리막 세정용	약품창고 : 31.5㎡	

※ 당진시 제출자료 재구성

위 시설 중 ‘○○2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구가 도시개발이 되면서 공

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기준: 1,500m³/일, 증설: 3,000m³/일)⁴⁾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진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건설과 2013년 7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 3. 31. 준공과 인계·인수과정을 거쳐 현재 가동 중에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진시 ○○과는 ‘○○2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 30일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설물 가동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⁵⁾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인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래 [표2]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인수받은 채 현재 운영 중에 있다.

[표2] ○○2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현황

사용 유해화학물질	사용용도	시설규모	연간 사용량(Kg)	감사시 지적사항
수산화나트륨 (NaOH)	분리막 세정용	약품저장탱크: 4m ³ 펌프: 380l/hr × 2대	7,200	장외영향평가 및 설치검사 미 실시 시설물 운영
황산 (H2SO4)	분리막 세정용	약품저장탱크: 1.5m ³ 펌프: 130l/hr × 2대	3,200	

※ 당진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당진시 ○○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포함된 6개 공공하수처리

4) 공사기간 : 2016. 1. 27. ~ 2017. 2. 28, 사업비: 16,921백만원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2015. 1. 1. 이후 준공된 현장은 시설물 가동 전 설치검사를 실시

시설을 2017. 12. 31.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⁶⁾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다가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기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진시 ○○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므로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외)을 설치·운영하면서 정기적인 점검 및 점검대장을 기록·비치하지 않았다.

2. 부여군 ○○○○사업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관리 부적정)

부여군은 아래 [표3]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용량 500m³/일 이상인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표3] 부여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6) 영업허가 대상 시설은 2016. 12. 31.까지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2017. 12. 31.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가동일	취급 유해화학물질	사용용도	저장용량	감사 시 지적사항
○○	11,000	2003.3.31.	수산화나트륨 (NaOH)	총인설비 PH 조정용	약품저장탱크 : 6m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미 실시 (4개 시설)
○○ ○○ ○○	최초 1,008	2006.11.23.	수산화나트륨 (NaOH)	총인설비 PH 조정용	약품저장탱크 : 3m³	
	증설 2,000	2013.4.30.	수산화나트륨 (NaOH)	총인설비 PH 조정용	약품저장탱크 : 1m³	
○○	500	2013.12.19	수산화나트륨 (NaOH)	총인설비 PH 조정용	약품저장탱크 : 1m³	
○○	1,600	2015.3.1	수산화나트륨 (NaOH)	총인설비 PH 조정용	약품저장탱크 : 2m³	

※ 부여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 시설 중 ‘○○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1,600m³/일)’은 2010. 2. 2. 착공하여 2015. 2. 8. 준공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설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여군 ○○○○사업소는 ‘○○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⁷⁾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4]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

[표4]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현황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2015. 1. 1. 이후 준공된 처리시설은 시설물 가동 전 설치검사를 실시

사용 유해화학물질	사용용도	시설규모	감사 시 지적사항
수산화나트륨 (NaOH)	총인설비 PH 조정용	약품저장탱크: 2m ³ 펌프: 1.3l/hr × 3kg/cm ² (3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검사 미 실시 (1개 시설)

※ 부여군 제출자료 재구성

부여군 ○○○○사업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포함된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7. 12. 31.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⁸⁾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정기검사를 득하지 않고 정기검사신청도 하지 않았다.

또한 부여군 ○○○○사업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나,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점검대장을 기록·비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당진시장, 부여군수는

[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고, 정기점검과 점검대장을 기록·비치하는 등 적의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8) 영업허가 대상 시설은 2016. 12. 31.까지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2017. 12. 31.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